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42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재섭 · 고동진 · 김상훈
유용원 · 김용태 · 권영세
최수진 · 강승규 · 박수영
김장겸 · 박상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 · 사업주단체 · 근로자단체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 ·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 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

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와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보조·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제1항제7호 중 “제158조제2항”을 “제158조제3항”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제41호 중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8조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와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보조·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④ -----제3항----- ----- -----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⑤ 제3항-----

⑥ -----
----- 제3항
및 제4항 -----

다.	-----.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7. 제158조제3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1. ~ 40. (생략)	1. ~ 40. (현행과 같음)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 업무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